

#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

## 심사보고서

2024. 12. 2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년 11월 8일  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  
다.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5일  
라. 상정일자: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 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11. 21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기획재정국장 정언택)

- 가. 제안이유
-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·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출연대상	한국지방세연구원
사업내용	-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발전 방안,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 -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, 간행물 발간, 포럼 운영 - 지방 세무공무원 교육, 자치단체 소통 협력 등 지원 사업
산출기초	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210,578,325천원의 1만분의 1.2
출연금	25,270천원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영등포구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,
  - 한국지방세연구원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및 동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전년도 보통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2를 적용하여 지방세 발전 기금을 강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사업비의 출연은 의무사항임.
- 검토결과
  -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,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적 특이사항은 없음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44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·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“한국지방세연구원”에 25,269천원을 출연하고자 함.

가. 출연대상: 한국지방세연구원

나. 관련근거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영)
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다. 사업내용

-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발전 방안,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
-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, 간행물 발간, 포럼 운영
- 지방 세무공무원 교육, 자치단체 소통 협력 등 지원 사업

## 라. 출연 필요성

-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그 경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.
-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 인력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통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,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

## 마. 출연금액(소요예산)

- 범 위: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
- 출연금액: 25,269천원
- 산출기초: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210,578,324천원의 1만분의 1.2

## 3. 참고사항

### ○ 관련규정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 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 
제152조 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영)
-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94조 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## 참 고 사 항

### 가. 지방재정법

####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나. 지방세기본법

####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
-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####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## 다.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###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-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  1. 1만분의 1.2
  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-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  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  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  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  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  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